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7월 31일

서울특별시 중구 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에서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를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100% 면제에서 50% 감면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조문 삭제 및 신설

- 제6조(수수료의 감면)제1항제11호 및 제12호 삭제

: 성실납세자 및 모범납세자의 세목별과세증명서 수수료 100% 면제

-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신설

: 성실납세자 및 모범납세자의 세목별과세증명서 수수료 50% 감면

나.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제3조 관련) 제1호나목(1)의 ‘세목별과세(납세)증명’을 ‘세목별과세증명서’로 명칭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세무2과장, 전화: 02-3396-5255, FAX: 02-3396-8718, E-mail: lyh05@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를 삭제하고 제6조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③ 「서울특별시 중구 성실납세자등 우대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대상자가 신청하는 세목별과세증명서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④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가 신청하는 세목별과세증명서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제3조 관련)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34종)

(단위:원)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 고
나.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세목별과세증명서	1건	800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u></p> <p>제6조(수수료의 감면)</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p> <p>1. ~ 10. (생략)</p> <p>11. 「서울특별시 중구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신청하는 세목별과세(납세)증명</p> <p>12.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가 신청하는 세목별과세(납세)증명</p> <p>②삭제(1997.1.18.)</p> <p><u>〈신 설〉</u></p>	<p><u>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u></p> <p>제6조(수수료의 감면)</p> <p>① (현행과 같음)</p> <p>1. ~ 10. (현행과 같음)</p> <p>11. <삭 제></p> <p>12. <삭 제></p> <p>②(현행과 같음)</p> <p>③ 「서울특별시 중구 성실납세자등 우대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대상자가 신청하는 세목별과세증명서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현행	개정안
<p><u><신설></u></p>	<p>④ 「<u>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u>」에 따른 모범납세자가 신청하는 <u>세목별과세 증명서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u></p>